

중소기업, 공급원가 오르면 납품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(상생협력법 제22조의2)

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란?

- 재료비, 인건비,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 신청 가능
-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되고 수탁기업이 원할 경우,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납품대금 조정을 위탁기업과 협의 가능
-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개시, 이를 위반하거나 30일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기부에 분쟁조정 신청 가능



※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단가조정이 불가피한 경우, 수탁기업이 직접 또는 조합을 통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하고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중기부 분쟁조정 신청 가능(상생협력법 제22조의2) / 수·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사전 조정 가능(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1조, 제17조)

기업간 불공정거래 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와드립니다.

불공정거래 신고센터란?

- 수탁·위탁거래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상담·신고·안내
- 수탁·위탁거래 기업 간 분쟁조정 상담·안내
-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및 분쟁조정 해결을 위한 중소기업 법률자문 지원

지역별·업종별 신고센터(총 69개소)

※ 무료 법률상담(온라인, 전화) 및 현장으로 해결(현장클리닉) 지원



지원내용

■ 법률상담·자문 지원

불공정거래 관련 법률 검토 및 법적 구제 절차 등에 대한 전문 변호사 법률 자문 (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)

■ 수탁·위탁 분쟁조정 지원(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)

수탁·위탁거래 기업 간 분쟁발생 시 협상력과 법률적 지식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분쟁조정 지원을 통해 소송 이전 단계에서 합리적 해결방안 제시



신청방법

- 유선접수 : (대표번호) 1357 + 9 또는 각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전화문의
- 온라인접수 : 'https://poll.mss.go.kr' 사이트 접속 후 불공정상담 또는 온라인 신고 메뉴 이용